

주제논문 1

인터넷뉴스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절차의 개선방향

성 동 진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사무차장

인터넷뉴스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절차의 개선방향

성 동 진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사무차장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이하 ‘언론중재법’)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포털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규정¹⁾하여 언론보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언론사뿐만 아니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직접 정정·반론·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²⁾

1) 제2조 (정의)

18.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제외한다.

19.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란 제18조에 따른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제14조 (정정보도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 등”이라 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반론보도 및 추후보도의 경우에도 각각 제16조와 제17조에서 제14조의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제17조의2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청구, 제16조 제1항에 따른 반론보도청구 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 등”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 등(이하 “기사제공언론사”라 한다)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기사제공언론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기사제공언론사가 제15조 제2항(제16조 제3항 및 제17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의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를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포털 뉴스가 언론보도 유통의 한 축을 담당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 대상에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포함시킨 것으로 그 개정 취지는 국민들의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고 그에 따른 포털 보도의 파급력이나 전파력이 점점 더 높아져 보도의 인지가 이전에 비해 용이해짐에 따라, 잘못된 보도로 인해 침해되는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이는 모두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법제도의 적용 과정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의 특성 및 언론사와의 계약, 다른 법률의 규정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토론에서는 현행 법률 내용 및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말해보고자 한다.

1.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법률적 정의에 따른 한계

주요 포털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서 각 언론사들과 기사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전송받은 기사를 그대로 뉴스서비스 영역에서 단순매개만 할 뿐 해당 기사의 작성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언론사와의 계약에 따라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 이것은 법률 조항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언론중재법’ 제2조(정의) 조항의 제18호 및 제19호를 같이 놓고 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포털들은 기사를 생산하지 않고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만하고 있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포괄되며, 따라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 포털들의 경우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것에 그 역할이 제한되므로,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권한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언론의 자유 보장과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2009년 7월 31일에 전부 개정되어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개정 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를' 이하 '신문법') 제10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항을 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의 제목·내용 등을 수정하려는 경우 해당 기사를 공급한 자(기사제공 언론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언론보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언론보도를 매개하는 자가 그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그간 사회적 합의 및 사적 계약으로 보장되던 것을 법률로 명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관한 이와 같은 법률 규정을 볼 때, 언론보도의 피해자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정정·반론·추후보도를 청구하거나 조정을 요청하더라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 포털은 직접 이에 대해 판단하거나 조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II.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절차상의 문제점

이러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법률적 정의에 비추어보았을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언론중재법'의 실제 적용 시 몇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1.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시 문제점

언론보도의 피해자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상대로 정정·반론·추후보도를 청구하더라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해당 기사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사의 사실관계와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으며, 그것을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설혹 이를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언론사의 기사를 제공받아 매개만할 뿐 수정·삭제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구에 직접 응할 수는 없다. 때문에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에 청구 사실을 통보하고 그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직접 청구의 대상이 되어 불필요한 민원 및 분쟁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다.

2. 언론중재 절차상의 문제점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언론보도의 피해자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언론중재위원회를(이하 ‘언중위’) 통해 조정을 요청하더라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3자적인 입장에 놓이게 되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상대로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실무적으로는 선행결정(언론사와 피해자 간 합의 또는 언중위 직권조정결정)에 종속되어 그 결정에 따라 수정된 기사를 노출하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직권조정결정을 받게 된다. 또 신문법 제10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준수사항) 제4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의 제목·내용 등의 변경이 발생하여 이를 재전송 받은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재전송 받은 기사로 즉시 대체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언론사에서 수정한 기사를 전송하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이것이 자동적으로 반영되어 노출되도록 시스템을 구성해놓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결정사항의 이행을 위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별도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의 규정으로 인해 내용적으로는 제3자적 입장, 즉 옵저버(Observer)의 역할에 해당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조정 요청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매번 언중위의 조정에 출석하여 언론사와 피해자 간 합의 또는 직권조정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물론, 언론보도의 내용적인 것 이외에 별도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라면 응답 출석하여 조정 결정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행 법률규정상 그러한 구분 없이 정정·반론·추후보도가 요청되는 모든 언론보도에 대하여 출석하도록 하고 있어 실무적인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3. 언론 자유의 침해 가능성

법률 규정상 피해자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언론사와 별개로 정정·반론·추후보도를 청구하거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언론사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간의 불필요한 긴장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언론사 입장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소지가 있는 내용이다. 만약 언론사와 별개로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정정보도 등의 결정이 내려진 상

황에서 언론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인터넷뉴스서비스에만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 경우 해당 언론사는 언론 자유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으며, 타 법률 규정과의 충돌 문제 등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III.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절차 개선방안

1. '언론중재법'의 개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절차의 일방 당사자라기보다는 제3자적인 위치에 있으므로, 정정·반론·추후보도를 청구하거나 조정을 요청하는 대상은 언론사로 한정하고 청구 또는 조정의 결과가 해당 언론사와 계약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공히 적용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해당 언론사가 정정·반론·추후보도를 할 경우 이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도 동일하게 전송되도록 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전송된 형태 그대로 뉴스서비스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피해자의 권리보호와 언론 자유의 보장에 소홀함이 없으면서도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적용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언론중재 절차의 개선

현행법 개정 이전이라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에 참여하는 절차를 개선한다면 실무적인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출석하여 단순히 언론사와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직권 조정한 내용을 따르겠다는 결정만을 하는 상황이므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의 분쟁이 예상되지 않을 때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출석 없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렇게 분쟁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자가 표준적인 형태의 직권조정결정문을 작성하여 두고, 표준결정문대로 합의가 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출석을 면제해주는 형태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표준결정문 내용 외의 사항을 피해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역시 참석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